

복리후생비 사용 문의

- Q** 본 원에서 처리하는 택시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택시비의 경우는 통상 사전승인을받은 후 교통비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이나,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사전승인이 어렵고, 업무관련 출장이 아닌 귀가의 목적일 경우 현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택시비를 꼭 교통비로만 처리해야맞는것인지 아니면, 위와같은 사유로 복리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용도나 특성 등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할지의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여비교통비가 원칙이며,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다면 복리후생비로 분류해도 됩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한 이익에 연관된 비용 처리 질의 건

- Q** 계정 질의 드리고자 Q&A 남깁니다.
 자사에서 잡이익으로 처리한 수익이 있는데 이에 관련된 용역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은 매출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였으니 이에 맞추어 비용을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수수료나 다른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매출이 아닌 잡이익으로 반영하였어도 관련 비용에 대해 용역수수료 또는 잡손실 어느쪽으로 반영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사가 편리한 쪽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지입차 유류비 정산

- Q** 당사는 외부 지입차량과 계약을 체결하여, 월발생되는 지입료와 실제 운반하면서 발생하는 제비용(식대, 통행료)등의 증빙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운행거리 기준으로 이에 상당하는 유류비를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동 유류비 지원액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처리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A ≡ 지입차량과 계약 체결하여 유류비 포함한 총 발생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받기로 계약했다면 유류비도 포함시켜 처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여부 질의

Q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서비스/ 광고대행업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처와 홍보대행 계약 체결 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조특법 제6조에 규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
는지 문의드립니다.

A ≡ 조특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업종은 같은 법 제3항에 열거규정되어 있는 업종만 적용되는 것으로, 광고대행업은 열거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차량 렌탈관련 회계처리

Q ≡ 업무용 차량(승용차) 렌탈시 렌탈기간이 4년이면 금융리스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운용리스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A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렌탈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금융리스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귀사에게 이전되므로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처리를 하는데 귀사가 리스업체와 운용리스로 계약했는지 금융리스로 계약했는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모두 금융리스로 합니다.